

仲裁研究, 第 15 卷 第 3 號
2005년 12월 1일 발행, pp.267-301

논문접수일 2005. 10. 24
제재확정일 2005. 11. 23

남북경협증가에 따른 위험의 완화방법으로서의 보험제도*

- 북한보험법의 법원문제를 중심으로 -

An Increase the South-North Economic Corporations
and Insurance as a Scheme for the Transfer of Risk

- Focus on the Source of North Korea Insurance Law -

김 선 정** Sun-Jeong Kim

〈목 차〉

- I. 서 론
- II. 북한보험제도의 법원과 내용
- III. 남북교류에 따른 위험대처실태
- IV. 결 론

주제어 : 북한 보험법, 보험법의 법원, 개성공단 보험규정, 경협의 위험
완화 수단, 남북 간 보험 분쟁의 해결.

* 이 논문은 2005년도 남북 상사증재 정책세미나 및 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하였던 글
을 수정·보완한 것임.

**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I. 서 론

이 글은 보험제도가 남북한 경제교류의 증가와 확산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는 방법의 하나가 된다는 전제 아래, 남북한의 보험관련법제 및 사법체계상 남북한 가운데 어느 쪽이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옳은가를 살피려는 것이다. 현재까지 남북 간 왕래와 경제교류에 따르는 위험은 남북교역 및 투자위험, 경수로사업관련위험, 자유왕래위험 정도이고 대체로 남한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에 의하여 담보되어 왔다.¹⁾ 그러나 남북경협의 이정표라고 할 개성공업지구의 본격 개발에는 기업 활동에 수반하는 거의 모든 위험이 잠재하고 있다. 남북경협의 증가와 보험제도의 활용에 관한 종래의 연구들은 주로 남북한 기업이 협력하는 절차와 과정을 통하여 남북한 보험 산업을 하나의 법체계 아래 두는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로드맵을 그리는데 치중하고 있다. 필자도 그 연구의 가치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당장 중요한 것은 개성공업지구의 입주와 생산 활동이 개시된 시점에서 보험제도가 이들 기업을 얼마만큼 보호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북한에의 왕래나 북한에서의 사업이 남한에서의 활동에 비하여 위험이 낮다고 말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더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북한이 제정한 개성공업지구보험규정은 공업지구 내 기업 활동의 위험을 오직 북한 보험자에 맡기도록 함

1) 다만 북한 내 외국인기업의 보험가입이나 합영회사재산의 보험가입은 북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외국인기업법 제23조, 합영법시행세칙 제63조). 북한에 투자하는 남한기업의 거대한 투자위험의 담보는 단순한 경제문제에 그치지 않고, 사실상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우선 한국수출보험공사의 해외투자보험을 응용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이 보험시장규모는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보유계약 및 보상경험도 별로 없는 상태이다. 거대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일단 투자프로젝트위험을 보험으로 인수하고 이 보험을 금융시장에 증권으로 내놓아 위험을 해지하는 증권화 절차를 통하여 투자위험을 담보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한다(박원일, “보험리스크의 증권화-CAT 본드를 중심으로”, 「고려대 법학연구원 2004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54~55면. 그러나 유형화가 어렵고 확률을 알기 힘든 정치적 위험 등을 수치화해야 하고 또 투기적 요소가 너무 강하다는 문제 등 선결과제가 많으며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으로써 남한기업은 사실상 위험보장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선 기업 활동에 착수하고 있는 형편이다.

남한은 생·손보 산업에서 세계적 보험강국이라 할 수 있으며²⁾ 현재 보유계약건수가 1억 건을 훨씬 상회하는 등 보험제도는 개인생활이나 기업 활동에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사회체제가 다른 북한의 보험제도는 남한의 그것과 목표와 성격을 달리하여 발전되어 왔고 경제발전의 차이 때문에 남한의 그것과 괴리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보험제도는 자본주의 기업 활동의 안전성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듈다. 북한경제의 특성은 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근간으로 한다고 이해할 때, 이는 일정한 ‘소유의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남한의 보험제도나 국·공영보험과 사영보험의 그 역할을 분담하는 남한 보험 산업과는 그 구조와 성격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 깊게는 남북한이 교류위험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이와 같은 보험제도에 대한 인식과 제도의 괴리를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지만 당장 북한 진출기업들의 위험은 남한 보험사업자들에 의하여 담보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필자는 그 이유를 북한 보험제도의 법원 즉 보험법 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체계의 취약성에서 찾고자 한다.

첫째, 위와 같은 관점에서 기업보험과는 달리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보험문제는 여기서 다루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한다.³⁾ 둘째, 본고는 주로 남북한 보험법규의 차이를 부각시키고자 하므로 보험 경제적 분석은 하지 않는다. 셋째, 이 주제를 다룸에 있어서 독일이나 중국·대만·홍콩의 사례가 유익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2) 스위스리가 발간한 「2003년 세계보험」에 따르면 남한의 보험산업은 거수보험료기준 생보는 세계 7위, 손보는 세계 11위를 나타냈다. 국민 1인당 연간보험료는 1243달러이다.

3) 북한지역에 근무하는 남한근로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을 적용하는 남부교류협력법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것 같으나 이를 광범위하게 참고하지는 못하였다. 넷째, 북한의 법체계나 법원의 역할은 남한과 다르고, 보험제도 운용의 실제도 차이가 있을 것이나 북한법의 이해를 위한 자료를 구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정된 자료를 갖고 이야기하는 필자가 잘못 이해하거나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II. 북한 보험제도의 법원과 내용

(1) 북한보보험제도의 특징과 법계

남북한의 보험관련법을 살펴보면 많은 제도적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사업주체문제만 하여도 그렇다.

북한은 1946년에 국가와 민간공영의 보험주식회사를 설립한바 있으나 이를 1954년 폐지함으로써 보험 업무는 국가독점이 되었고, 그 후 신용업무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관리를 위하여 1964년에 국가보험사업과 대부기능을 산업은행에 집중시켰고 1976년에 산업은행이 중앙은행에 통합됨으로써 보험업무도 중앙은행의 독점사업이었다.⁴⁾ 현재 북한의 금융기관은 은행과 비은행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비은행금융기관으로는 국가보험기관, 저금기관, 협동적 신용기관 등이 존재한다.⁵⁾ 보험기관으로는 조선국제보험회사가⁶⁾ 국내·외의 비생명보험과 국제보험 및 해외재보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북한 내 인보험의 원수보험은 중앙은행저금보험처가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험사업의

4) 법무자료 제166집,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I)-민사관계법-」 법무부, 1992, 229면.

5) 삼성금융연구소, 「북한금융시장의 현황과 생보사 진출방안」, 2000, 35면.

6) 조선국제보험회사는 1947년 설립되었는데 본사에 해상, 비해상, 재보험, 투자 등의 부서를 두고 있다. 직할시에는 총지사를 두고 있고, 시·군에는 지사를 두고 화재, 선박, 적하, 건설공사, 자동차, 농작물, 과일, 집진승, 비행기, 산림, 철도보험 등과 외국인대상 재산보험사업을 영위하며, 일본에 대리점을 두고 주로 조총련교민의 재산보험과 생명보험을 일본보험사로부터 수재하고 있다. 해외 10여개국에는 보험 및 투자대표부 등을 두고 있으나 실적은 발표하지 않고 있다.

주체는 국가인 것으로 이해된다. 북한보험법에 따르면 다른 나라의 보험사업자의 대표부, 지사, 대리점도 보험 사업을 할 수 있으며, 북한 내에 소재하는 재산이나 내외국인에 대하여 보험을 인수한 외국투자보험기업은 수입보험료의 30% 이상을 북한보험기관에 출재하도록 되었으나 아직 외국보험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험 사업에 대한 감독은 비상설의 국가보험위원회가 사실상 담당한다(보험법 제10조).

이와 같은 차이는 근본적으로 보험제도의 가치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보험은 “자연재해나 사고로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미리 막거나 발생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자금을 형성하고 이용하는 경제관계”로 정의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회주의 국가 그 자체가 ‘최대의 보험’이라는 인식을 전제로 보험 제도를 이해한다. 그러기에 사회주의 국가보험은 국민들이 조성한 보험기금을 국민들을 위하여 이용하는 참다운 국민적 보험제도라는데 그 본질적 우월성이 있는 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보험은 착취계급의 이윤추구를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국민의 자주성을 유린하고 창조적 경제생활을 침해하는 경제적 조건으로 이해한다.⁷⁾ 요컨대 북한에서는 보험제도의 역할을 ① 노동자의 생활안정, ② 협동단체의 재산보호, ③ 협동단체나 주민들의 유휴자금 동원, ④ 대외교류의 안정성 확보에 두고 있다고 한다.⁸⁾ 이와 같은 견해는 1995년의 북한자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⁹⁾ 만일 보험제도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유지된다면 적어도 사영기업에 의한 보험사업의 영위는 허용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 밖에 북한 보험제도는 ① 사회주의적 색채, ② 보험기관국유화 등 보험사업의 국가독점체계, ③ 국내보험과 국제보험의 이원체계, ④ 의무보험제도 중심체계,¹⁰⁾ ⑤ 농업보험의 활성화¹¹⁾, ⑥ 인보험

7) 이홍육/이귀련, “사회주의 국가의 보험제도”, 「해법·통상법」, 한국해사법학회, 1995, 27면.

8) 법무자료 제166집, 229면.

9) 장영찬, “자본주의 보험제도의 반동적 본질”, 「경제연구」 제86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45~47면, 고흥석, 「북한보험법」, 보험연수원, 1999, 21면에서 재인용.

보다 손해보험 중시체계 등을 그 특징¹²⁾으로 하며, 생명보험은 은행에 의하여 영위되고 있다는 점도 특이하다. 보험 제도를 생명·신체의 보호라는 측면보다도 재산보호의 측면에서 파악하고 실제로 생명보험 실적은 미미하며¹³⁾ 보험 제도를 사회주의적 소유와 확대재생산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도 남한과 다른 점이다.

그러나 북한과의 경제교류가 활발하고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 속하는 중국의 경우, 보험제도는 현대사회생활의 필수적 조성부분으로 사회주의경제를 성숙시키는데 필수적이며 적극 활용할 제도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기에 보험제도의 폐해를 설명함에 있어서도 보험제도의 본질과 속성에 따른 문제점만 지적하고 있을 뿐¹⁴⁾ “보험 자본은 자배계급의 착취수단”이라는식의 설명은 찾아보기 어렵다. 실제로 현행 중국 보험법은 북한 보험법과 같은 해인 1995년 제정되었으나 조문수도 158조에 이르고 그 내용도 상당히 세밀하다. 북한보험법에서 산견되는 불완전규정은 찾아 볼 수 없다. 중국 보험법은 남한의 보험업법과 상법 제4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 중국에서 보험법 성문화의 역사는 청조말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¹⁵⁾ 일본 상법을 모방하여 상법상 행위편에서 보험을 규정하도록 초안을 만든바 있으나¹⁶⁾ 공포되지 못했고, 국민정부는 1927년 보험법을 공포하였으나 이것 역시 시행되지

10) 북한의 경우 자동차운임에 보험료가 포함되는 방식으로 인체보험이 일종의 가입강제보험으로 되어 있는 이외에 자원적(임의적) 인체보험에 있다고 하나 급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는 형식이어서 사실상 가입강제 보험이라고 한다. 법무자료 제166집, 229면.

11) 북한의 손해보험종목 중 농작물보험의 비중은 28%에 이른다. 신동호, “동서독 보험제도의 통합을 통해 본 남북한 보험산업의 협력 및 발전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 창립38주년 기념학술대회 주제발표 요지집」(2002.5.10), 30면.

12) 범인을 보험계약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일부의 설명은 맞지 않다.

13) 김치중, “남북경제협력 진전에 따른 보험거래 활성화 방안”, 「손해보험」 2000년 6월호, 17면.

14) 黃慧鵬 外, 「中國保險法與保險法律實務」, 華夏出版社, 2002, 9頁.

15) 上揭書, 17頁.

16) 현행 중국보험법 제66조는 입법례로서는 드물게 보험계약자 자살면책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일본법(상법 제680조 제1항 제1호)의 영향이 아닌가 추측된다.

못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¹⁷⁾ 그 후 몇 가지 관련규정으로 보험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나 문화혁명기에 보험은 명색만 남았다고 한다. 그러나 사회주의민주법제수립일정에 따라 1981년 중화인민공화국경제합동법에 재산보험규정이 들어가는 등 입법조치를 취하다가 중국보험시장의 발전적 수요에 따라 단일법전화에¹⁸⁾ 박차를 가하게 되어 1995년 보험법으로 제정되었다. 그 후 관련사항의 입법조치가 뒤따랐는데 2002년 1월 13일의 「보험공사관리규정」은 보험법개별조항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을 인정하였다.¹⁹⁾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말 중국의 입법자들은 일본법을 모델로 보험법의 입법화를 시도했지만 실제 중국에서의 첫 보험 사업은 1805년 광주에 진출한 영국자본에 의하여 ‘광주보험행(廣州保險行)’이 설립됨으로써 실현되었다. 이와 같은 연유로 현행 중국보험법도 영국법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²⁰⁾ 어떻든 국민당정부를 축출하고 사회주의 국가가 된 중국은 자본주의적 유형의 보험법을 그대로 지니고 간 반면 북한은 보험 제도를 매우 비판적 시각

17) 대만 보험학자인 鄭玉波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보험법의 원형이라 할 수 있었던 1927년 국민당정부 보험법을 기초로 제정된 1961년 대만보험법은 각국의 장점을 두루 취했으나 일본법과 함께 대체로 독일법계에 속한다고 한다. 「保險法論」三民書局, 1989, 9~30, 37頁.

18) 보험법제정에 불구하고 해상보험에 대하여는 1992년 해상법을 적용하고 해상법에 규정이 없는 것은 보험법을 적용한다. 이홍욱, “중국민상법과 현행상사법률제도”, 송원박진태박사화갑기념 「현대기업법의 신전개」, 2002, 485면.

19) 중국에서 급속한 입법화가 진행됨에 따라 법령상호간의 우열이 분명치 않자 2000년 전인민대회는 소위 「입법법」을 만들었다. 이에 따르면 제1위 헌법, 제2위 협의의 법률, 제3위 국무원행정법규, 제4위는 부문규칙과 동등효력의 지방성법규이나 양자의 우선순위는 여전히 명백하지 않다. 이들 법규간의 모순과 불일치가 생기는 경우에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입법법은 문제의 종류에 응하여 전인대상무위원회, 국무원 등의 재정제도를 규정하였다. 아울러 입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법규의 적용에 있어서는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이 통달되어 하급심을 기속한다. 실제로 개개판결보다 사법해석이 법령과 동등의 효력을 지니는 것으로 중시된다.

20) 중국보험법 제53조는 대다수 입법례 및 일본상법과는 달리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인이익을 요건으로 삼으며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지 않다. 이는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인이익을 요건으로 삼았던 (현재는 거의 폐기된 요건인)영국보험법(1774년 생명보험법 제2조, 제3조)의 영향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李顯東 主編「保險糾紛法律解決指南」機械工業出版社, 2003, 91頁; John Birds/Norma J. Hird, BIRDS' MODERN INSURANCE LAW, 6th ed., Sweet & Maxwell, 2004, pp.36ff.

에서 바라봄으로써 시장경제체제에 요구되는 현대적 보험법제의 구축에 실패했다고 생각된다. 북한과 중국이 같은 해인 1995년에 보험법을 독립단행법전으로 체계화하였으나 그 내용에서 현저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보험법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더하여 각종의 위험을 보험제도로 방어해 낼 수 있는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음으로써 북한의 보험법제는 정체상태에 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법이 다른 어느 나라로부터 왔는가를 아는 것은 한 나라의 법체계를 이해하거나 법해석의 기준을 발견함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다. 보험관계를 포함시킨 1990년 민법제정은 느닷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²¹⁾ 그 연혁을 본다면 구소련법의 법계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혁명이념은 그 기초를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둔다고 본다면 러시아법사상의 영향아래 상당부분의 법의 계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측한다. 그 후 북한은 중국과 정치적·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보험법부분에서 두 국가의 유사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이후 꾸준히 법령정비작업을 벌여 법체계를 구축해가고 있고, 법령의 내용면에서도 사상과 이념의 문제는 상당히 탈색되어 있고 실용주의적 색채가 강화되었다.²²⁾ 우리가 중국에서의 법체계의 모호함, 법의 미비한 내용, 법적용의 불확실성을 지적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중국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때는 상당한 진전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중국과 북한을 같은 사회주의법계로 묶는 것은 편의적인 분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사법분야에서의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만일 북한사

21) 최종고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북한의 1950년 민법초안은 1952년 러시아공화국민법전과 비슷했고, 제2초안은 1964년의 러시아공화국민법전 제정과정에서의 논의나 초안을 미리 입수하여 초안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초안이 비록 법전화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재판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해 왔으며, 1990년 민법전은 1964년의 러시아민법전과 그 구체적 규범내용에는 크게 보아 별 차이가 없다고 한다. 전계서, 109~111면.

22) 물론 1993년 헌법개정으로 중국은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로 전향하였을 뿐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한 것은 아니므로 각종 규제조항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회의 개방속도와 정도가 중국식으로 진행된다면 보험법의 내용도 큰 틀에서는 남한과의 차이를 거의 해소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최근 국내 모 보험회사가 중국에 현지법인 형태의 진출을 하는 데에는 많은 부분에서 자본주의 보험제도의 전형을 계수했다고 보여 지는 중국 보험법이 장애로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와 같이 두 나라를 비교하는 이유는 단지 중국과 북한의 보험법제의 입법적 연혁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개방시대에 이르러 당장 남한기업들이 북한의 보험 제도를 활용하는데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당연하다는 점을 연혁적으로 풀이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앞으로 북한이 보다 본격적인 경제교류를 하고자 한다면 체계적인 내용의 보험 법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간취할 수 있다.

(2) 보험법의 법원문제

1) 서

북한법은 기본적으로 공사법의 구별이 없는 등 사회주의 법의 특성이 강하므로 법의 분류, 그 법적 구조 및 적용에 있어서 남한의 그것과 같은 것으로 전제할 수 없다.²³⁾ 실제로 북한은 통일적인 법전을 편찬하지 않다가 2004년 8월 25일에야 평양법률출판사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전(대중용)」을 출간하였는데 여기에 수록된 112개의 현행법률이 현행법의 전부인지 명확하지 않고 또 법률과 시행령의 구분도 분명하지 않는 등 북한법의 전모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²⁴⁾

23) 법무자료 제166집, 4면~17면.

24) 최종고, “북한법의 역사적 형성과 변화”, 「법학」 제46권 제2호(2005.3), 서울대 법학 연구소, 409~410면.

2) 성문법원

① 민 법²⁵⁾

1990년 민법과 가족법은 각기 단행 법률로 제정되었다. 보험제도 특히 계약과 관련하여 민법의 많은 규정이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나 특히 주목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공화국 민법은 국제조약이나 협정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공화국령역’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민사법률 관계에 적용한다는 점(제10조), 기업의 존재(제12조 등)와 비록 소비품 중심이겠으나 ‘법적 근거에 의하여 생겨난 재산’에 대한 개인소유권(제37조, 제58조 이하)을 인정하는 점, 소위 ‘계획에 기초하지 않은 계약(제135조 이하)’을 인정하는 점²⁶⁾ 등이다.

남한과 달리 북한 민법은 보험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제205조~제212조). 이에 따르면 “공민의 생명, 건강이나 재산에 대하여 보험에 드는 행위는 보험계약에 따라” 하고 “보험계약은 뜻하지 않은 재해로 인한 손해로부터 인민들을 보호하며 놀고 있는 돈을 동원り 용할 수 있게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제205조). 북한민법에는 조문별 표제가 없으나 우리 상법 보험계약편과 연관 지어 요약해 보면 보험계

25) 1958년 2월 1일의 내각결정 제16호로 채택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민법 및 민사소송법 초안을 준비하는데 관하여」에 따라 작성된 민법전(제2)초안은 총칙, 소유법, 채무법, 저작권법, 창의고안권법, 상속법의 6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러시아민법전과 흡사한 내용이었지만 입법화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문법처럼 기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오랫동안 민사실체관계에 관한 단일법령이 제정되지 않은 채 각 사항별로 여러 가지 법령이 존재하였고 앞의 초안과 구소련법의 해석 등을 통하여 민사관계가 규율되어 왔다. 1990년에 재산관계와 실체관계에 관한 최초의 단일법령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민법이 제정되었다. 최종고, 전계서, 110면.

26) 북한에서는 민사계약을 “계획적 계약”과 “계획에 기초하지 않은 계약”으로 구분하고 있다. 계획적 계약은 두 당사자에게 다같이 해당되는 계획과제에 기초하여 체결하거나 혹은 어떠한 계획과제에도 기초함이 없이 체결되는 계약이다. 북한민법은 자재공급계약, 상품공급계약, 농업생산물수매계약, 기본건설시공계약, 화물수송계약의 5가지를 계획적 계약으로 규정하며 보험계약은 계획에 기초하지 않은 계약이다. 전자는 계약체결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후자는 임의계약인 점, 전자는 당사자의 의견이 다르다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중재기관의 중재절차를 통한 체결로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지만 후자에서는 이러한 절차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 여러 가지이다. 법무자료 제166조, 165면.

약자에게는 보험료지급의무가, 보험자에게는 보험금(또는 보험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제206조), 피보험자나 보험금지급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고의사고를 초래한 경우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제207조), 제3자의 허물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인정(제208조)²⁷⁾, 보험료분할지급보험의 경우의 분할보험료지급의무와 보험료불지급시의 보험계약의 실효 및 인보험 계약의 부활(제209조, 제211조)가능, 사망 및 상해보험의 보험금지급사유 명정, 생명보험과 어린이보험에 있어서의 만기환급금지급의무(제210조), 재산보험에 있어서 사고 발생 없이 계약기간 종료시 보험료의 보험기관 귀속(제211조)명시, 재산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발생시의 통지의무 및 손해방지의무(제212조)있음을 규정한다. 보험계약의 성립시기에 대하여는 보험기관이 보험에 든 공민에게 보험증권을 내준 때(제206조)인데 이는 북한 민법상 계약은 한편 당사자의 제의와 이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으로 이루어진다는 일반원칙(제136조)과 다른 것이다. 보험관련규정을 보면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지급의무 이외에 여러 가지 보충적 의무를 강제하고 있다. 이는 보험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이 동지적 협력과 방조의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민법의 태도에서 비롯한 것으로 근로자들로 하여금 국가재산과 사호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나아의 융성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공동노력 하여야 한다는 절약규율보장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²⁸⁾

북한은 다음에서 소개하는 바와 같이 1995년 4월 보험법을 제정하였다. 그럼에도 이곳에서 굳이 민법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는 적어도 형식적으로 민법과 보험법과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법의 특징은 어느 부분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면서 기존 법령의 존폐관계나 기존법령과의 상하관계를 명시

27) 제208조는 또한 “제3자가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보험에 든 공민은 그 사고결과를 고착시켜야 한다. 이 의무를 어기면 보험보상금을 적게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확대손해방지를 의무화한 것으로 보인다.

28) 법무자료 제166집, 231면.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이다. 다만 민법의 대부분의 내용이 보험법에 흡수된 것으로 보아 새로 제정된 보험법에 규정한 문제들은 신법우선의 원칙상 보험법의 적용만이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²⁹⁾ 둘째는, 민법제정 5년이 경과하면서 제정된 보험법에 민법과 다른 내용상의 차이가 있는가 하는 점이 궁금하였기 때문이다.

② 1995년 보험법

1995년 4월 6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에 따라 보험법이 제정되었다.

동법은 모두 5장 47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은 보험법의 기본, 제2장은 보험당사자, 제3장은 보험계약, 제4장은 보험보상, 제5장은 보험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및 분쟁해결이라는 표제를 붙였다. 조문별 표제는 없다. 이 보험법 제3장~제5장은 남한의 상법 제4편과, 제1장과 제5장은 남한의 보험업법에 해당되는 내용이 혼합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간략한 형식과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보험법은 동법의 목적으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안정을 들고 있으나(제1조) 민법과 같이 ‘늘고 있는 돈을 리용할 수 있게’한다는 표현은 빠져 있다. 그러나 이것이 보험제도의 기능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보험법은 보험을 인체보험과 재산보험으로 분류하고 전자에는 생명보험, 어린이보험, 여객보험, 재해보험 이, 후자에는 화재보험, 해상보험, 농업보험, 신용보험 같은 것이 속한다고 하는데 이는 예시적인 것이다. 보험법은 국가는 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데 맞게 보험의 종류를 늘이며 보험 사업이 자원성과 의무성의 원칙에서 올바로 진행되도록 한다고 규정(제2조)하여 보험사업

29) 고평석 교수는 “임의의 자원적 보험거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관한 민법 제205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으나, 새로운 보험법이 제정됨으로써 자원적 보험계약과 의무적 보험계약을 포함한 일반에 적용되게 되었다... 한편 강제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관한 민법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고”라고 설명하고 있다. 전계서, 46면.

과 계약이 국가의 감독아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 내의 보험 사업은 국가보험기관이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는 공화국의 해당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와 공화국영역 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도 보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다른 나라 보험 기업의 대표부, 지사, 대리점도 보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제3조 3문). 보험법은 조문 안에 항을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유경제무역지대에 한하여 외국보험사업자의 사업을 허용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일부는 외국기업이 북한에서 일반적인 보험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며 그 근거로 제6조를 들고 있다. 그러나 제6조는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 공화국영역에 있는 외국기관, 외국투자기업, 외국인이 보험에 들려는 경우 공화국영역에 있는 국가보험기관 또는 외국투자보험기업이 하는 보험에 들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외국보험사업자가 국가보험기관과 대등한 입장에서 보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의 근거로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안에서 외국보험사업자가 보험 사업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규정이라고 새기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결국 자유경제무역지대 밖에서는 보험사업의 국가독점을 선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³⁰⁾

보험법은 국가가 보험당사자들이 평등한 지위에서 보험계약을 맺고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고, 보험 사업을 장려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나라의 보험기관, 국제보험기구와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조선국제보험회사는 아시아·아프리카 보험 및 재보험연맹 등의 회원으로 되어 있다.

북한 보험법 제2장의 일부, 제3장, 제4장은 남한 상법 제4편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남한 상법 보험편이 115개 조문인데 비하여 북한 보험법은 불과 35개 조문으로 되어 있다. 북한 보험법에서

30) 현재 나진·선봉지대에서 보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보험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는 보험당사자는 보험자와 피보험자라고 하여 우리 상법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를 당사자로 보며 인보험과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라는 용어를 각기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과 다르다. 따라서 남한과 달리 인보험의 보험수익자라는 용어도 없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권리·의무 등 법적 지위가 달리 해석되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의무보험, 외화로 하는 보험, 재보험을 하려는 보험자는 국가보험 관리기관과 합의하여야 하는데, 여기의 ‘합의’가 보험 사업에 대한 포괄적 승인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개별계약에 즉응한 합의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보험자는 해당보험계약표준조건과 보험료율을 만들어 국가 보험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지 않은 것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 위의 ‘합의’ 또는 ‘승인’이 없이 시행된 때에는 벌금을 물리는데, 벌금액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 때 보험계약의 사법적 효과가 어떤지는 알 수 없다. 외국투자보험기업은 자기가 받은 보험료의 30% 이상을 정해진 보험기관에 재보험하여야 한다. 이처럼 출재비율을 일률적으로 규정한 것은 보험자의 능력이나 위험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다.

보험법은 ‘피보험리의’를 보험계약의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피보험이익의 존재를 손해보험계약에서는 필수요건으로 보지만 인보험에서는 일부학자가 입법론으로 도입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³¹⁾ 인보험에서 어떤 기준으로 피보험이익의 존부를 결정하며 피보험이익이 언제까지 존속하여야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와 같은 규정은 아마도 북한 보험제도가 재산보험중심으로 발달해 온 데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 추측한다. 보험법은 피보험자의 보험료지급의무도 규정한다. 보험법 제16조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을 때 보험대상에 대한 중요자료들을 보험자에게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남한 상법 제651조 등의 고지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북한 민법에 이에 관한

31) 이 문제에 대하여는 김선정, “생명보험계약상 피보험리의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제49집, 한국보험학회, 1997, 275~312면.

규정이 없었던 것에 비하면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남한(상법 제655조)과 같이 의무위반시의 법적효과에 대한 규정은 없다. 보험법은 또한 피보험자가 재산보험대상의 피해와 손해를 막기 위한 계약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재산보험사고가 생기면 곧 보험자에게 알리고 손해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남한 상법상 위험유지의무(제653조),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제657조), 손해방지의무(제680조)와 유사한 취지의 규정인 듯하나 규정내용에서 차이가 있고 특히 위반시의 효과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다. 인체보험계약은 국가 보험기간이 정한절차와 방법에 따라 맺어야 한다. 재산보험계약은 보험계약표준조건에 따라 맺어야 하며, 표준조건이 없는 사항은 보험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이는 ‘표준조건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개별약정 우선원칙과는 상관없는 것이고, 표준조건의 내용이 많이 미흡하다면 오히려 보험계약자평등대우의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북한 민법은 보험증권의 교부시를 보험계약의 성립시기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보험법은 보험자의 보험증권 교부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민법과 보험법간의 중요한 그리고 거의 유일한 차이점이다. 보험계약의 성립시기를 언제로 보느냐 하는 것은 고지의무의 이행시기를 비롯하여 보험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보험법은 이 문제에 대하여는 규정하는 바 없다. 보험법에는 남한 상법의 낙부통지의무, 승낙 전 보험사고, 적격 피보험체의 보호와 같은 내용은 없다. 남한 상법상 보험증권 교부의무는 보험계약의 효력에 불과하다(제640조). 보험법상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시기는 피보험자가 보험료 또는 보험료지급담보를 한 때로서 이는 북한 민법에 없던 규정으로서 남한 상법 제656조에 유사하다. 보험법은 피보험자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생명보험, 어린이보험계약을 맺은 자가 정해진 기간에 보험료를 물지 않으면 보험계약의 효력은 없어지며 보험료를 다시 물면 그 때부터 보험계약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민법 제209조와 그 내용이 같다. 이것은 남한 상법 제650조의 보험료지급지체의 효과와 제650조의2의 보험계약의 부활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 구체적 내용은 차이가 있다. 보험법은 재산보험계약의 대상은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하며 보험가격은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고 하며 보험계약 개신시에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이는 당연한 것으로 남한 상법도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며(제668조) 일부보험 등도 가능할 것이다. 다만 보험법 규정만으로는 미평가보험(남한 상법 제671조)도 인정하는지 불분명하다. 보험법에는 기평가보험계약의 보험가액이 보험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의 처리방법에 관한 남한 상법 제670조 단서에 상응하는 내용도 있다. 보험법은 재산보험기간 중에 보험대상에 미치는 위험이 변동되면 보험당사자들은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하고 이 경우 위험이 커지면 덧 보험료를 받고 위험이 줄어든데 대하여는 해당한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한다. 이는 남한 상법상 객관적 위험변경증가에 관한 규정(제652조 등)과 특별위험 소멸시의 보험료감액청구에 관한 규정(제647조)을 합한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보험법은 보험계약의 목적을 양도할 수 있음과 이 경우 보험자에게 미리 알릴 것을 규정하고 있다(남한 상법 제648조). 이는 손해보험에 국한하여 인정할 사항이다. 보험법은 명시적으로 인보험에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나 성질상 인보험에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다.

보험법은 보험계약기간 중 취소할 수 있는 보험계약으로 생명보험과 어린이보험을, 취소할 수 없는 보험으로 재해보험과 여객보험을 들고 있다. 취소의 주제나 사유, 법적 효과에 대한 규정은 없다. 보험자는 재산보험대상에 대한 피보험자의 관리정형을 요해할 수 있으며 사고요소를 발견하면 그것을 없앨 데 대한 의견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보험법상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보험자는 계약에서 정한대로 보상하여야 하는데, 인체보험에서는 이를 보험금으로, 재산보험에서는 이를

보험보상금으로 표현하고 있다. 보험금액은 보험부상금의 최고한계이며 보험료계산의 기초로서 보험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하며 보험보상은 보험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한다. 이는 우리 상법상 초과보험(제669조), 중복보험(제672조)에 해당하는 것인데 정액보험을 고려하지 않은 규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없다. 일부보험에 대하여 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남한상법과 같으나(제674조), 당사자 간에 달리 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남한과 차이가 있다. 기평가보험의 경우 손해액은 손해가 발생한 곳과 때의 가격에 따라 보험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한다. 보험법은 생명보험, 어린이보험의 경우에 보험료를 다 내고 보험사고 없이 만기가 된 때에는 만기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여객보험, 재해보험, 재산보험의 경우에는 이미 받은 보험료는 보험자의 수입으로 된다고 규정한다. 특이한 것은 생명보험가입자가 법원(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재산몰수형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 이 때 보험금불지급사유가 되는 판결의 종류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보험법은 손해방지의무에 대하여 규정한다. 또 전부보상과 일부보상의 경우의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를 규정한다.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가 인정될 경우는 피보험자가 보상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내야 보험자로부터 손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남한 상법 제729조와 같은 인보험에 있어서의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금지와 같은 조항은 없다. 보험법은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데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나 손해, 성질손해, 부패변질, 녹, 마모 같은 것에 의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한다. 성질손해에 대한 것은 남한 상법 제679조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나 고의사고면책은 남한 상법 제659조, 제732조의2, 제739조와 대비할 때 보험의 종류를 고려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다. 전쟁위험 부담보 규정은 남한 상법 제660조와 같다.

보험법은 보험 사업에 대한 국가보험관리기관의 지도통제 및 이에

따르지 않았을 때의 제재, 분쟁해결방법을 규정한다. 보험사업 관련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고 한다. 이 규정은 민법에 없는 것이다. 분쟁해결기관으로 제3국 중재기관을 든 것은 국제보험거래분쟁발생시를 예전한 것이다.

이상에서 남한 상법과 북한 보험법을 대비하였다. 위의 간략한 대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 보험법은 조문 개수나 규정내용의 염밀성에서 남한 보험법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남한 상법 등에도 문제가 많으나 이는 보험원리와의 정합성이나 보험계약 관련자들의 이해관계의 충돌에서 생기는 문제들이다. 이에 비하여 북한의 보험법은 조문만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족적 법 규정이라 보기 어렵다. 어느 쪽의 법이 우수한가의 문제 이전에 북한 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때 보험계약의 주체나 관계자는 심한 불안정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북한 보험기관이 수행하는 보험계약을 통하여 남북경협의 위험을 완화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이 보험시장을 개방하여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참고로 1992년 이래 보험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보험자의 50%가 생명보험, 40%가 비생명보험인데, 중국의 보험회사 29개중에는 중국보험사가 13개인 반면 외자, 중외합자 등이 15사에 달하는 등 시장개방을 하고 있다.³²⁾ 아울러 보험대리점, 중개인, 손해사정인, 보험계리인 제도 등의 법제를 구축· 육성하면서³³⁾ WTO가입 후의 시장개방 압력 등에 대하여도 준비하여 왔다.³⁴⁾ 보험법상 계약관련 규정이 상당히 진전되었음을 물론이다.

32) 黃慧鵬 外, 前揭書, 196頁.

33) 上揭書, 221頁.

34) 구체적인 대응책은 上揭書, 265~280頁.

③ 2004년 개성공업지구보험규정

(가) 서 언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하여 북한은 2002년 11월 27일에 「개성공업지구법」을 발표했고, 잇따라 하위규정을 제정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2004년 10월 11일 공포한 「개성공업지구보험규정」이다. 동위원회는 북한 내각과 해당 기관들이 이 규정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³⁵⁾

(나) 내 용

이 규정의 목적(동 규정은 ‘사명’이라고 표현)은 개성공업지구의 보험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염격히 세워 기업 활동과 거주자, 체류자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데 있다(제1조). 이 규정은 개성공업지구에 창설한 기업과 지사, 영업소, 사무소 등의 법인뿐만 아니라 공업지구에 체류, 거주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 등 개인에게도 적용하며(제2조), 개성공업지구에서의 보험 사업은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이³⁶⁾ 정하는 공업지구보험회사가 하도록 하였다(제3조). 공업지구보험회사는 공업지구 안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고 보험 사업을 할 수 있으며(제4조), 보험에 들려는 법인 또는 개인은 공업지구보험회사의 보험에 들어야 하고(제5조), 의무보험대상(제6조)을 법정하였다.³⁷⁾ 개성공업지구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자인 공업지구보험회사와 개인 또는 법인(이들을 ‘피보험자’라 칭하고 있다)으로 보험자는 보험대리인을 통하여

35) 연합뉴스, 2004. 10. 11.

36)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을 지도하는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은 북한의 내각 산하 기관으로서 여러 권한을 가지며 공업지구법규의 광범위한 시행세칙 제정권을 가진다. 이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윤대규, “개성공단 운영에 따른 법적 문제점”, 「성균관법학」 제16권 제2호, 성대비교법연구소, 2004, 6~7면.

37) 1. 화재 및 폭발, 자연재해로 인하여 건물 및 기계장치에 생긴 물적 손해
2. 가스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생긴 손해
3.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 부상당하게 하였거나 제3자의 재산에 입한 손해
4. 종업원이 노동과정에서 재해로 입은 손해(기업이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 종업원은 제외)

보험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보험계약은 서면계약이어야 하며(제7조), 보험에 들려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내야하는 신청서에는 보험대상, 보험가격 또는 보험금액, 보험기간, 책임범위 같은 사항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제8조). 보험계약은 보험자가 동의하고 피보험자에게 보험증권을 발행하면 성립하며(제9조),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발생한다(제10조). 보험료납부 전 발생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는 책임 없다. 보험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는 보험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조건에 따라 일시 또는 분할납부 할 수 있다(제11조). 계약체결 후 2월까지 보험료납부를 지체하면 보험계약의 효력은 없어진다. 보험료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보험자는 다시 기간을 정하여주며 그 기간에도 보험료를 지급하지 납부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자를 위한 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보험료의 납부를 지체할 경우 보험자는 다시 기간을 정하여 주며 그 기간이 지나도록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제12조).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을 양도하려면 서면으로 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보험증권이 양도되면 피보험자의 계약상 권리의무는 보험증권의 양수인에게 넘어간다(제13조).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안에 보험위험이 변경되면 제때에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보험자는 보험금액이 증가되었을 경우 해당한 보험료를 더 받으며 보험위험 또는 보험금액이 감소하였을 경우 해당한 보험료를 돌려주어야 한다(제14조).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보험대상 관리 상태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견한 결함의 퇴치를 요구할 수 있다(제15조).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48시간 안으로 보험자에게 알리고 손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고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제16조).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경감의무를 지며 손해방지비용으로 피보험자가 지급한 합리적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제17조). 보험사고 발생시에 보험자는 그에 대한 감정을 조직할 수 있으며 감정은 전문감정기관 또는 해당자격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

(제18조).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발생시 30일 이내에 보험보상청구서를 사고의 원인과 손해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보험자에게 내야한다. 30일 내에 보험보상청구서를 낼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제19조). 보험보상은 보험자가 보험보상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안으로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는 보험보상을 거절할 수 없다(제20조).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제3자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보상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다(제21조).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확보하여야 한다(제22조). 보험자는 보험기간 안에 보험대상이 없어졌을 때 등 일정한 경우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제23조), 어찌할 수 없는 사유로 보험사업을 다시 할 수 없는 경우, 보험계약 일방이 지불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 보험계약 일방이 파산 또는 해산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취소된다(제24조). 그 밖에 보험보상의 청구시효는 보험사고발생일로부터 2년이며(제25조), 공업지구보험회사의 보험에 들지 않은 자는 1만 달러까지의 벌금을 물린다(제26조). 보험사고관련분쟁은 보험당사자들이 협의방법으로 해결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중재, 재판절차 또는 북남사이에 합의한 분쟁해결절차로 해결할 수도 있다(제27조). 동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보험증권사항에 따라 처리한다(제28조).

(다) 평 가

개성공업지구는 북한 헌법이 인정하는 특수경제지대로서, 이 지역내에서는 특구의 법령이 북한의 일반법령에 앞서서 적용된다. 문제는 개성공업지구법의 하위법령인 개성공업지구보험규정이 ‘법’인 보험법보다 우선 적용 되는가라는 점이다. 개성공업지구보험규정의 내용을 보면 보험법과 중복되는 규정도 있으며 고지의무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을 볼 때 보험법과의 관계는 더욱 불분명하다. 이 규정 중에 보험법 제정 후 10여년을 경과하는 시점에서의 보험제도의 진전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일단 공업지구보험회사에 위험을 인수시킨다고 하여도 이들이 다시 출재할지도 보장할 수 없다. 더욱 보험기간 개시 전에 보험료납부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든가 보험계약의 성립시기를 증거증권의 불과한 보험증권발행시로 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보험계약 일방의 과산, 해산, 지불능력상실시 보험계약이 취소된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분쟁해결문제도 명쾌하지 못하다. 개성공업지구보험규정은 보험사고와 관련한 분쟁은 보험당사자들이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재판절차 또는 북남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해결절차로 해결할 수도 있다고 한다(제27조). 노동분쟁을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만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비하면³⁸⁾ 다양하고 유연한 분쟁해결이 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보험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 북한의 중재, 북한법원에 의한 재판, 남북 합의에 의한 상사중재의 4가지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다.³⁹⁾ 그러나 북한 측이 실질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납북한 상사중재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⁴⁰⁾

개성공단은 남한의 자본 및 기술, 북한의 노동 및 토지를 결합시킨 것으로 이것이 성공한다면 향후 남북경협의 전형적 모형이 될 것이다. 남한기업이 북한에 투자할 때 현재로는 북한 내의 기업 및 생산 활동을 위한 인프라가 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고 법과 제도적 장치들도 미비하므로 일정한 장소에 남한과 비슷한 기업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 개성공단건설의 취지일 것이다. 지리적 근접성, 동일한 언어 등 남한기업으로서는 남미, 중국, 동남아에 투자하는 것보다 북한에 투자하는 것이 편의하고 북한도 자본유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므로

38) 개성공업지구노동규정 제48조.

39) 중재나 재판을 남한과 북한, 국제사회의 그것을 각기 의미하는 것으로 새긴다면 선택지는 더 넓어진다. 이에 관하여는 제성호, “개성공단 관련 남북간 분쟁의 해결방향”, 「저스티스」 2005년 6월호, 한국법학원, 232~240면.

40) 손해보험협회는 국내보험사의 경우 남한법에 의한 분쟁처리절차를 허용하거나 필요한 경우 남북공동보험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치할 것을 희망한다. 손해보험협회, “개성공단 보험관련 현안검토”, (2005.1), 8면

환경만 조성된다면 북한투자가 급속히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생각만큼 투자증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 여러 요인이 있지만 남한기업은 북한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두려워하고 있는 점도 작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험인수 및 지급능력과 기법이 확인되지 않은 북한 보험사업자의 보험에 무조건 가입하도록 하는 개성공단보험규정은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업 활동의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기업들은 여전히 불안한 가운데 기업 활동을 수행하여야 하고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위험이 현재화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참고로 중국은 개혁개방초기에 홍콩에서 가까운 심천을 특구로 개방하여 화교 및 홍콩자본의 유입을 촉진하였고 대만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대만동포우대법까지 제정한 사례가 있다. 북한은 적어도 공업지구와 같은 특구에서의 보험

사업은 남한보험사들에게 전적으로 일임하거나 북한보험기관과 공동인수 등 시장을 공유하는 형태를 모색하여 남한기업들의 불안감을 일소하고 위험관리를 도와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득책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 기 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북한에 상법분야법령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미 1946년에 「상업기관에 관한 법령」, 「상업발전에 관한 법령」, 「상사회사 설립인가방침에 관한 건」, 「상업조합령」 등이 제정되었다. 1947년엔 「상업조합령」을 폐지하고 「상업허가제 실시에 관한 포고」를 통하여 회사 또는 개인으로서 상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점포를 완비하여 시·군인민위원회 허가를 얻도록 하였다. 1955년에는 「개인상공업허가에 관한 규정」 이, 1984년에는 「합영법」이, 1992년에는 합영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그리고 「사회주의 상업법」, 「도시경영법」이 제정되었다.

한편 보험제도의 전개와 관련하여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북한에서 주체사상의 법적 성과를 실현하는데 필수적인 사회보장법 분야라고 할 수 있다. 1946년에 제정된 「사회보험법」 아래 다수의 법령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해상보험을 규정하고 있는 1980년의 해운법도 중요하다.

그리고 위에서 열거하고 있는 것들이 성문법원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다. 북한에 있어서 법의 영역은 조선노동당의 정책의 그것과 기본적으로 궤를 같이 하며 법은 당 정책의 실현수단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당의 정책 그 자체는 물론 정책적 지시나 방침·원칙, 당의 권유사항이나 당지도자의 보고 등도 법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⁴¹⁾

3) 불문법원

북한에서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관습법의 법원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한다.⁴²⁾ 이는 관습법이 노동계급의 이익보다는 과거의 지배계급의 이익을 반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⁴³⁾ 또 인민에 의하여 구성되지 않은 법원의 판결이 입법기구가 제정하는 법과 동렬에 설 수 없다는 이유로 판례의 법원성도 부인한다. 과거의 판례에 대하여는 구소련이 최고법원의 ‘지도적 지시’를 하급법원의 재판상의 준칙으로 승인하였던 것과는 다르다.⁴⁴⁾ 조리의 법원성 또는 보충적 해석기준 여부와 관련하여 남한 민법 제1조와 같은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⁴⁵⁾ 그

41) 법무자료 제166집, 19면.

42) 북한은 일제시대 제정법령을 포함한 종래의 모든 규범의 무효를 선언한 후 백지상태에서 사회주의 질서를 지향하는 개별적 법령의 제정에 착수하였으나 이 작업이 일시에 완성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급하게 제정된 성문법은 불충분하고 불명확한 요소가 있었을 것이나 보충적 법원으로서의 관습법은 여전히 거론되지 않았고, 그 대신 ‘민주주의적 법의식’이라는 개념으로 성문법의 불비를 보충하여 왔다. 법무자료 제166집, 21면.

43) 그러나 북한체제가 성립한지 50여년을 경과하면서 북한사회에 고유한 관습법이 없는지 의문이다.

44) 그러나 실제적으로 중요한 기능은 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이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보아야 단언할 수 있는 문제이다. 최종고, 「북한법」, 박영사, 1993, 7면.

45) 다만 1946년 3월 6일의 북조선임시위원회 사법국 제정 「재판소, 검찰소의 구성과

러나 실제로 정치적 도덕이념이나 법의식은 법원으로 실질적인 기능을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⁴⁶⁾ 실정법과 법현실과의 간극을 메꾸는 역할을 하여야 할 조리가 주로 정책적 의사전달의 통로가 된다면 그만큼 법적 안정성은 떨어지는 것이 된다.

III. 남북교류에 따른 위험대처 실태

1. 남북교류초기(개성공업지구 개발이전)

1988년의 7·7선언을 계기로 남북경협문제가 부상하고 뒤이어 1989년부터 남북한경제교류가 실시되었으나 북측은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경협을 민족내부간(무관세) 거래로 규정한 후에도 관행상으로만 이를 인정하였고 남한은 1997년의 IMF사태로 차질을 빚는 등 남북경제교류는 그동안 우여곡절 속에 기복을 보였다. 그러나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후 경제협력이 공식화된 이래 남북경협은 방식도 다양해지고 그 양도 증가하여 왔다.⁴⁷⁾ 통상적으로 이와 같은 경제교류는 위험을 수반하는 것이고 그에 대하여 사전적·사후적으로 다양한 대비책이 마련되는 것이 보통이며 보험제도는 핵심적인 대응방법으로 떠오른다.

직무에 관한 기본원칙』 제20조는 판사가 “민주주의적 의식과 조선인인의 리익에 입각하여 재판하여야 한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성문법의 공백을 메꾸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46) 김도균, “북한 법체계에서의 법개념론과 법치론에 관한 고찰”, 「법학」 제46권 제1호 (2005.3), 서울대법학연구소, 466~467면.

47) 투자보장, 분쟁조정, 이종파세방지, 청산결제 등의 4대기본합의서 챕터 등 제도 구축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일부의 대북사업 승인을 받은 기업중 투자사업을 진행 중인 기업이 많지 않은 점, 민간기업의 거래성교역이 감소세인 점, 남북경협의 주축인 위탁가공거래의 증가세 둔화추세, 남북간 정치적 긴장, 미국의 대북제제 등 남북경협이 답보상태라는 지적도 있다. CEO Information 제507호, 「북한경제와 남북경협의 현주소」 (2005.6.29), 삼성경제연구소, 9~14면.

그러나 지금까지 남북경협에서 활용된 보험제도들은 대체로 남한의 자구적 방위방법이었으며, 남북한 간 경제교류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히 창안된 보험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⁴⁸⁾ 다만 제한된 사유가⁴⁹⁾ 있는 경우에 한국수출입은행의 남북경협기금에서 손실보조가 이루어져 왔다. 남북경협의 증가에 불구하고 남북한 간 보험제도의 이용이 활성화되지 못한 현재의 상황에 이르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첫째, 지금까지의 남북한경협은 순수한 경제협력이라기 보다는 주로 정치적 논리에 의하여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역설적으로 위험발생의 가능성을 줄이기도 했다고 볼 수 있다. 즉 순전히 경제적 교류나 활동일 경우에 발생할 경제적 불안정 및 정치적 불안정요인을 정치적 협상을 통하여 제거해 왔다는 것이다. 둘째로, 지금까지의 남북한 경제교류에 부수하는 위험은 주로 남한이 부담하는 양상이었다. 즉 북한은 사회적·정치적 위험은 차치하고라도 남북경협과정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할 경제적 여력이 거의 없었다. 현재까지 남북한 경제교류 사업 중에 가장 복잡한 양상을 띠운 것은 경수로건설공사라고 생각된다. 이 사업에는 신변안전보험, 조립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적하보험, 동산종합보험, 자동차보험, 사용자손해배상책임보험 등의 보험계약이 따랐다. 그러나 사업의 성격상 북한에 위험대응책을 세우거나 위험을 분담하도록 요구할 상황은 아닐 것이다. 또 북한 보험산업의 사회주의적 특성과 발전정도를 볼 때, 이들 다양한 위험을 북한의 보험사업자가 인수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시된다고 할 것이다. 셋째, 남북경제교류의 양상이 비교적 단순하였다는 점이다. 남한에 의한 인도적 차원의 물자제공이나 경수로건설을 위한 중유지원,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단순교역과 같은 것이 경제교류의 중심인

48) 남북한주민왕래보험이나 특수지역신변안전보험 등이 기존의 해외여행보험 등의 내용을 변형하여 등장하였다.

49) 반출한 물품대금의 회수불능이나 지연으로 인한 손실의 경우에 선적전 반출손실보조를 하는 것을 비롯하여, 선적 후 반출손실보조, 빙입손실보조 등.

상황에서는 비교적 위험이 높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경수로건설사업이나 금강산관광사업에서의 위험은 건설공사, 근로자재해, 재산종합, 신변안전보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었다. 금강산관광객의 안전위험에 대하여는 남북한주민왕래보험에 위험을 담보하였다.

(2) 남북교류 2기(개성공단입주 이후)

경제특구가 설정되고 한국기업의 직접투자, 가공무역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남북한 간 경제협력이 증가하고 이것이 사회 각 분야에서의 전반적인 교류확대로 이어지고 다양화하면서 보험제도는 적어도 3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첫째, 지금까지 진행된 정부주도의 경제교류에 비하여 자율성을 특징으로 하는 민간교류가 증대하면 이에 따르는 위험도 남북한 당국 간 해결보다 민간차원에서의 해결, 정치적 문제로서의 해결보다 경제논리에 입각한 해결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까지의 위험은 매우 제한적 범위에서의 위험이지만 앞으로 교류가 본격화되고 다양화 될수록 더 많은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개성공단의 경우 공단조성초기사업단계에서의 위험은 개성사무소 건물 및 집기에 대한 화재보험, 건설현장에 투입된 중장비에 대한 동산보험, 파견 직원에 대한 근로자재해보상보험, 중장비에 대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의하여 담보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개성공업지구보험규정이 제정되기 이전의 계약이다. 공업지구 내에서의 본격적인 기업 활동은 보다 많은 보험을 필요로 한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지금까지의 보험계약은 현대아산, 현대건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 KEDO)등 제한된 보험계약자(북한 보험법상 피보험자)가 체결한 것이다.⁵⁰⁾ 그러나 개성

50) 종래 남북경협과 관련하여 체결된 보험은 남북한주민왕래보험(북한을 방문하는 사람의 상해, 인질구조비용, 석방보험금, 인질위로금 등을 담보하는 남한 손보사 상품으로 주로 금강산관광객이 가입하고 있다. 이 보험은 해외여행자보험을 변형한 것이다), 건설공사 및 선박보험(금강산관광개발과 관련한 장전항부두시설, 편의시설, 온정리 온천장 신축공사 건설공사보험, 금강산관광용 여객선 및 부선 총 7척의 선박

공업지구에 입주하거나 투자하는 기업들은 모두 보험계약자가 될 것인데 그들이 선택의 여지없이 북한보험사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문제에 직면한 것이다. 남북교류의 초기에 남북한이 직면하는 위험의 내용과 정도는 각기 다른 것이기 때문에 각자의 위험은 각자의 보험제도에 의하여 담보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런 까닭에 지금껏 남북경제교류에 따르는 위험은 주로 남한이 부담하는 형태였고 그 위험은 남한의 보험제도에 의하여 담보되어 왔다. 예를 들면 대북지원이나 교역에 있어서 수송위험은 지금까지는 주로 선박을 이용하여 왔기 때문에 남한의 해상적하보험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남북간에 정하기에 따라서는 남북한 중 한 곳의 보험제도에 의하여 담보될 수도 있다. 예컨대 특정지역에서 특정주체의 책임 하에 남북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의 재해보험과 같은 것이다.⁵¹⁾ 남북한 경제교류의 양상이 종래의 단순한 물자교류에서, 위탁·가공무역형태로 발전하였고,⁵²⁾ 앞으로는 직접투자형태로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외

보험 등으로 북한 조선국제보험회사에의 가입의 예외로 남한 손보사가 보험자), 경수로건설관련보험(한국전력과 KEDO의 요청 및 KEDO와 북한 간의 협정에 따라 남한 손보사들이 신변안전보험, 조립보험, 적하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사용자배상책임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동산종합보험, 자동차보험 등을 인수하였고 자동차책임보험은 조선국제보험사가 단독 인수하였다. 자동차 책임보험 중에도 북한 자동차보험 배상책임한도액인 5만 달러 초과 대인배상책임보험 및 북한에서 담보하지 않는 자기 차량손해는 남한에서 부보 한다), 개성공단의 건설관련보험(화재보험, 동산종합보험, 근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있다. 그 밖에 물자수송을 위한 적하보험이 남한 손보사에 부보 되었다. 이 중 장전항건설공사, 경수로건설공사에서는 실제로 보험사고가 발생한바 있다.

51) 근로자재해보상과 같은 사회보험에서는 남북한근로자를 통합하여 취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동일직장에서의 처우라는 면에서 임금인상요구 등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있다. 현행 「외국인투자기업으로동규정」(제7장)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에서 일하는 공화국공민인 종업원은 병 또는 부상, 일할 나이가 지나 일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보험, 사회보장에 의한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 혜택은 기업과 종업원이 내는 사회보험기금에 의해 주어지며, 외국인투자기업은 사회보험료의 납부, 사회보험기금의 지출에 대하여 기업소재지 사회보험기관과 직업동맹조직의 감독을 받는다. 그러나 실제로 이런 문제까지 완벽하게 관리되지는 못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윤대규, “북한 내 남북경협 현장의 노무관리문제”, 「북한법연구」 제5호, 북한법연구회, 2002, 28~29면.

52) 남한이 북한의 2001년 제정 가공무역법의 적용대상인지는 논란이 되고 있다. 이백규, “북한의 가공무역법 「북한법연구」 제5호, 북한법연구회, 2002, 75~77면.

국의 수입업자가 가입을 요구하는 생산물책임보험도 수요가 있을 것이다. 또 작물, 풍수해 보험 등의 활용이 기대된다. 농업은 북한에 있어서 중요한 산업이고, 현재 북한경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식량난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이 2005년 「농업주공전선」을 전개 중이며 대대적인 증산운동에 나서고 있음은 이를 말한다. 북한의 기상여건이나 경작여건에 비추어 빈발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생산의 피해를 분산하기 위하여 북한은 농업보험을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국영보험은 결국 국가재정에서 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북한 내에서의 위험전가효과는 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 보험의 해외재보험을 통하여 위험을 전가할 수 있었다고 한다.⁵³⁾ 남한에서도 이런 유형의 보험제도에 대한 수요가 인식되어⁵⁴⁾ 부분적으로 입법적 조치가 강구되었다. 또 남한의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단체 등이 농업협력사업으로 영농단지시범개발사업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⁵⁵⁾ 농업보험에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위험측정이지만 남한의 노력만으로 이를 측정할 수는 없다. 이때는 북측의 경험이 소중할 것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보험계약자와 다양한 종류의 보험 수요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개성공업지구의 보험사업자는 독점적으로 제한된 것이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 1만 달러까지의 벌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문제는 독점적인 보험사업자의 위험인수능력, 보상능력 등 전문성이 분명하지 않으며 보험법규법의 체계나 내용, 효력관계, 법원의 불명확성 등으로 보험보호를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본문에서 본바와 같이 북한의 보험법제나 법집행의 예측성 등을 고려할 때, 남한측 경협당사자가 북한보험제도의 활용을 기피하는 근본적 이유가 된다. 그럼에도 북한은 경수로건설관련 위험도 조선국제보험사로 하여금 인수하고자 하였었고, 이번 개성공업지구에서는 북한독점을 법제화하기에

53) 고평석, 전개서, 33면.

54) 이에 대하여는 김선정, “작물보험의 입법적 고찰”, 「보험학회지」 제37집, 한국보험학회, 1989, 169~196면.

55) 예컨대 민간단체인 통일농수산사업단의 삼일포협동농장 공동영농단지개발사업 등.

이르렀다. 그 점에서 개성공업지구보험규정은 특정지역 내 보험사업의 문호를 개방했던 1995년의 보험법보다도 후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남북교류에 잠재하는 위험에 대한 대책은 우선은 남한의 풍부한 경험과 확실한 지급능력을 바탕으로 경협위험을 인수하도록 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남북한 보험제도분야에서의 발전을 기획하여야 할 것이다. 조선보험회사가 공업지구 내의 위험을 원보험으로 인수하고 이에 대하여 수수료 지급 후 남한 보험사가 재보험으로 인수하는 소위 *fronting*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일부에서는 남북한 합작보험사의 설립을 제안하기도 하나 보험계약의 실체법의 적용문제가 남게 되므로 특히 남한법의 적용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한 효과가 의심스럽다고 할 것이다. 물론 남한 보험회사가 위험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북한 측이 위험측정 자료의 제출을 제한하거나 보험사고발생시 손해사정업무를 보안 등의 이유로 봉쇄하거나 제한하지 않도록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⁵⁶⁾ 어느 일방의 독점보다는 남북한 간의 경험과 통계와 이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기상이변 등 자연재해, 대형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제도나 보험대체제도의 연구도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한 보험문제를 전문적이고 일관성 있게 협의할 창구나 기구를 확보하는 문제가 시급하다.

기본적으로 남북한 모두 보험 분야에서의 협조 역시 훌륭한 남북경협의 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한다면 시장선점이나 수익모델부채시장이라는 인식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부는 개성공단개발사업이 남북공동번영의 경협사업으로, 북한의 개혁·개방 확대와 안정적 변화를 지원하여 북한의 변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그 의의를 정리한 바 있다. 그 의의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성공업지구보험규정이 개정되는 것이 급하다.

56) 경수로건설공사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 이런 문제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 신동호 외, 「보험회사의 북한진출에 관한 연구」, 보험개발원, 2001, 37면.

IV. 결 론

북한법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북한은 완비된 종합법령집을 간행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 아래서는 어떤 것이 현행규범인지도 파악하기 어렵다. 보험을 자본의 착취도구로 여기는 생각과 이에 더하여 위험측정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 사회지표나 각종 통계자료가 미공개이거나 신뢰감이 떨어지고 사고가 발생한 경우도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손해사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회는 보험 제도를 발달시키는데 근본적 제약이 있다. 그럼에도 남북한 경제협력이 증대하고 이에 따라 남한기업이 북한을 상대로 또는 북한지역에서 상행위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 간 상사중재의 필요성이 커지듯이 기업의 위험완화방법으로 보험제도의 활용도 필수적이다. 그러나 보험제도가 제대로 활용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아 보인다. 사회주의 경제체제 아래서의 보험의 기능과 의미에 대한 인식, 북한법의 불명확성과 불안정성, 통계제도 등 보험의 수요를 창출하는 기본적 여건의 미비, 북한 보험사업자의 불명료성과 경험부족 등을 감안할 때 북한보험제도만으로 기업위험을 담보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럼에도 개성공업지구규정이 북한보험사업자만 위험인수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은 공단 내 남한기업을 보험보호로부터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보험사업자를 규정하고 보험계약을 규율함에 있어서도 북한 보험법의 현대화가 진전되어야 한다. 북한 보험법은 사회주의 법계의 원조인 소비에트법에 유래한다. 그동안 중국 보험법이 사회주의법계로부터 이탈하여 꾸준한 발전을 해온 것과는 달리 낙후 상태에 머물러 왔다. 북한법이 갖는 전체적인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보험법만이 자족적으로 명확한 법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지만 법의 기술적 성격상 현재보다는 훨씬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발전이 안 된 상태에서 또 사회주의

경제체제 아래서 자본주의적 보험법으로의 변모를 촉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겠지만 자본적 시장경제를 부분적이나마 수용한다면 자본주의적 위험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대처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북한보험법은 보험 분쟁의 애매한 해결방법도 극복하여야 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95년 보험법은 보험사업관련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여의치 않을 때에는 공화국의 재판,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하며 제3국의 중재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다고 규정한다(제47조). 개성공업지구보험규정은 ‘협의’에 의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중재, 재판절차, 북남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해결절차로 해결할 수도 있다고 한다(제27조). 그러나 이들 규정에서 분쟁해결의 원칙형으로 제시하고 있는 ‘협의’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순수하게 당사자간 협의라면 법으로 규정한 것이 무의미하고 만일 북한의 국가기관이 개입 또는 유도하는 해결이라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 의문이 남는다. 뿐만 아니라, 재판, 중재 등도 우리처럼 엄밀한 의미가 아니어서 문제이다. 개성공업지구보험규정이 보험법의 특별 규정인지도 확실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북남사이에 합의한 상사분쟁해결절차’가 상사분쟁해결합의서 및 중재위원회합의서에 따른 절차라고 이해한다면 남북중재위원회에서 보험분쟁의 중재기관도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전체적인 남북관계의 틀에서 보아 무난할 것이다. 다만 중재위원회가 남북한 동수로 구성되는 관계로 순조롭게 중재기관이 지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개성공업지구보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분쟁은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따른 분쟁해결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앞으로 이 모든 사항들에 대한 남북간 합의와 이의 문서화가 필요하다.

북한의 보험사업 기관과 보험법제가 남한의 그것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결국 북한진출 남한기업의 불안정으로 나타나 경협의 증가 또는 지속을 방해할 것이다. 남북경협에 따르는 북한의 보험정책의 변화와 북한 보험법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법체계 및 운

용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제거되어야 할 문제이나 이는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과 표리를 이루는 문제이다. 결국 이런 여러 요소들을 감안할 때 남한기업의 위험은 남한 보험사업자들에 의하여 담보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전제 하에 협력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고평석, 「북한보험법」, 보험연수원, 1999.
- 김도균, “북한 법체계에서의 법개념론과 법치론에 관한 고찰”, 「법학」 제46권 제1호(2005.3), 서울대법학연구소.
- 김선정, “생명보험계약상 피보험이익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지」 제49집, 한국보험학회, 1997.
- 김선정, “작물보험의 입법적 고찰”, 「보험학회지」 제37집, 한국보험학회, 1989.
- 김치중, “남북경제협력 진전에 따른 보험거래 활성화 방안”, 「손해보험」 2000년 6월호.
- 박훤일, “보험리스크의 증권화-CAT 본드를 중심으로”, 「고려대 법학연구원 2004년도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04.10.30).
- 법무자료 제166집, 「북한법의 체계적 고찰(I) - 민사관계법-」 법무부, 1992.
- 삼성금융연구소, 「북한금융시장의 현황과 생보사 진출방안」, 2000.
- CEO Information 제507호, 「북한경제와 남북경협의 현주소」 (2005.6.29), 삼성경제연구소.
- 신동호, “동서독 보험제도의 통합을 통해 본 남북한 보험산업의 협력 및 발전에 관한 연구”, 「보험학회창립38주년 기념학술대회 주제 발표 요지집」 (2002.5.10).
- 신동호 외, 「보험회사의 북한진출에 관한 연구」, 보험개발원, 2001.
- 대한손해보험협회, “개성공단 보험관련 현안검토”, (2005.1).

- 이백규, “북한의 가공무역법 「북한법연구」 제5호, 북한법연구회, 2002.
- 이홍욱/이귀련, “사회주의 국가의 보험제도”, 「해법·통상법」, 한국해사법학회, 1995.
- 이홍욱, “중국민상법과 현행 상사 법률제도”, 송원 박진태 박사 학간기념 「현대기업법의 신전개」, 2002.
- 윤대규, “개성공단 운영에 따른 법적 문제점”, 「성균관법학」 제16권 제2호, 성대비교법연구소, 2004.
- 윤대규, “북한 내 남북경협 현장의 노무관리문제”, 「북한법연구」 제5호, 북한법연구회, 2002.
- 제성호, “개성공단 관련 남북간 분쟁의 해결방향”, 「저스티스」 2005년 6월호, 한국법학원.
- 장영찬, “자본주의 보험제도의 반동적 본질”, 「경제연구」 제86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 최달곤, 「북한민법의 연구」, 세창출판사, 1998.
- 최종고, “북한법의 역사적 형성과 변화”, 「법학」 제46권 제2호(2005.3), 서울대 법학연구소,
- 최종고, 「북한법」, 박영사, 1993.
- 李顯東 主編「保險糾紛法律解決指南」 肌械工業出版社, 2003.
- 鄭玉波, 「保險法論」 三民書局, 1989.
- 黃慧鵬 外, 「中國保險法与保險法律實務」, 華夏出版社, 2002.
- John Birds/Norma J. Hird, BIRDS' MODERN INSURANCE LAW, 6th ed., Sweet & Maxwell. 2004.

ABSTRACT

An Increase the South-North Economic Corporations and Insurance as a Scheme for the Transfer of Risk

- Focus on the Source of North Korea Insurance Law -

Sun-Jeong Kim

Following the increased economic corporations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many companies participate the corporation program. They needs insurance policy as a scheme for the transfer of risk from those individual company to it to an insurer.

This paper review the possibility of the North Korea insurance authorities and research the origin, history, structure and context of the North Korea insurance law. The North Korea Insurance law differ from the South Korea and China's. North Korea Insurance authority has not capability of doing insurance business both side of underwriting and indemnity. Partly, it caused the uncertainty, insufficient and vague of the insurance law.

The writer conclude that the North Korea insurance law faced to the needs of modernization. Especially, the Gyesung Industrial Complex Insurance Regulation couldn't cover the investor and company's risk because it is not based on the nature and basic principles of insurance.

Key Words : North Korea Insurance Law, source of insurance law, Gaesung Industrial Complex Insurance Regulation, risk alleviating measure of economic corporation, Insurance dispute resolu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